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나11162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6. 28.

판 결 선 고 2023. 8. 23.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소 116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23. 8. 23.까지 연 5%, 2023.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차용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16. C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30.,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고 한다), 피고가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보증금채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의 작성일은 2016. 9. 26.경으로 보이고, 당시 차용금은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작성일 이후 위 1,500만 원 차용금 기재 윗 부분에 ‘플러스 일백팔십 + 500 있음’으로 추가 기재되고, 위 1,500만 원 차용금 기재 아래 부분에 ‘+ 900만 원 있음’으로 추가 기재 되어 있으며, 피고가 위 차용증 뒷면에 ‘뒤에 있는 액수는 어머니의 파산, 면책 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기재 하였으나, 위 차용금 추가 문구를 기재한 시기가 피고가 차용증 뒷면에 위 문구를 기재한 시기보다 앞선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추후 기재된 채무에 관하여도 연대보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차용증에 최초 기재된 1,500만 원 외에 추가 기재된 금원도 연대보증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8. 4.경까지 C의 D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수당 채권에 관한 압류, 추심절차를 통하여 주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채무는 소멸되었다.

2) 피고는 2019. 7. 29.부터 2021. 9. 4.까지 원고에게 합계 57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압류 및 전부, 추심절차를 통한 주채무 변제 여부

을 21, 22, 2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 C, 제3채무자 D 주식회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타채1003, 2015타채145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8타채1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3, 4, 5, 2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갑 20호증(영수증)에 의하면 2013. 4. 16.부터 2014. 9. 24.까지 원고가 추심한 금액 75,478,641원은 전부 C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타채1003, 2015타채145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6. 9. 16. 이전에 신청이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에 원고의 C에 대한 주채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타채1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에 이 사건 주채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C에게 2009. 5. 26. 15,000,000원, 2012. 9. 21. 21,000,000원, 2015. 4. 22. 9,262,6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C는 이 사건 주채무 외에도 원고에게 다수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압류 및 전부, 추심명령을 통하여 원고가 받은 금원이 이 사건 주채무에 변제충당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570만 원의 변제 여부

을 4, 10, 11, 13, 14호증(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 또는 C가 2019. 7. 29.부터 2021. 5. 27.까지 원고에게 합계 5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각 금원의 지급시기와 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채무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약정이율 월 2%)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변제금 57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의 2016. 9. 26.부터 2018. 4. 25.까지 1년 7개월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15,000,000 × 0.02 × 19개월]에 충당되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후 남은 이자의 기산일인 2018. 4.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8.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¹⁾, 2023.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용, 판사 김주연, 판사 조길상

1)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1. 10. 6.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8. 2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보증금채무의 약정이율인 연 24%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와 같이 정한다.